

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

제정	1981.	7. 1	조례 제 85호
개정	1984.	2. 21	조례 제 268호
	2008.	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1.	4. 15	조례 제1769호
일부개정	2015.	9. 30	조례 제2118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9.	8. 2	조례 제2508호(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「도로법」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1. 4. 15, 2015. 9. 30>

제2조(정의) ① “보도구역”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.

② “횡단차도”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의 통행로를 말한다.

③ “원인자”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주유소
2. 주차장
3. 자동차정류장
4. 자동차수리장
5. 자동차세차장
6.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

제3조(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)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존을 위해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8. 2>

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

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4조(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)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공사대행과 비용부담)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6조(비용의 부과징수)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.

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(규칙)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1984. 2. 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7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9. 30 조례 제2118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8. 2 조례 제2508호,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
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[별표] <개정 2011. 4. 1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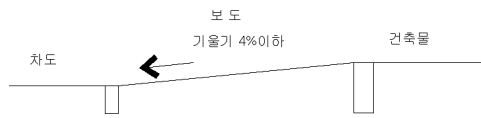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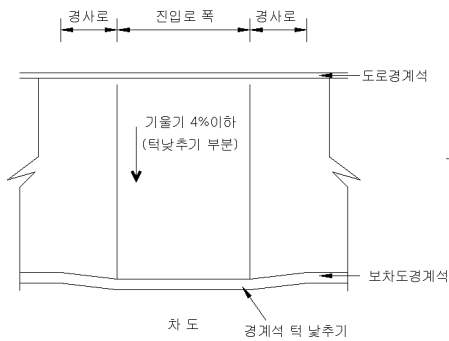
시 공 기 준

1. 보도구역 횡단차도 설치 유형

- 1) 유형 I : 보도 횡단경사가 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(횡단경사는 가급적 2% 이하)

(평면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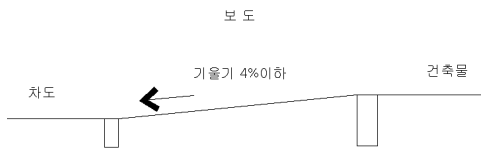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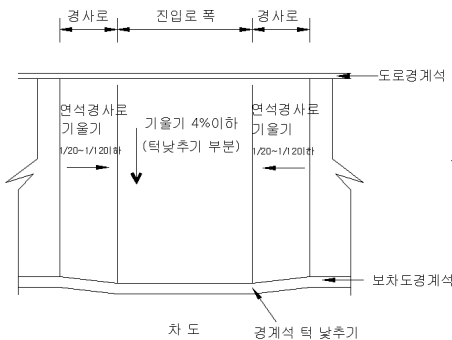
(단면도)



- 2) 유형 II : 보도 횡단경사가 급한 경우 적용 (횡단경사는 가급적 2%이하)

(평면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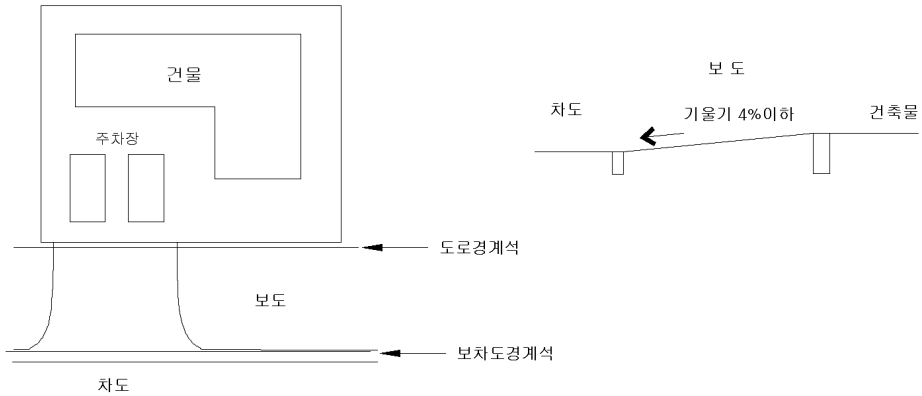
(단면도)



※ 도로(보도) 구조 및 주변여건상 보도턱을 낮출 경우 심한 경사로 인해 보행환경을 극히 저해할 경우 차량 진출입로판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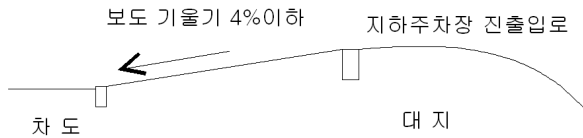
2.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

- 차량 진출입로(보도)는 보도설치 유형중 보도여건 감안 합리적인 유형 설치
- 차량진출로는 보도 계획고와 일치(보도 계획고와 단차를 두지 말 것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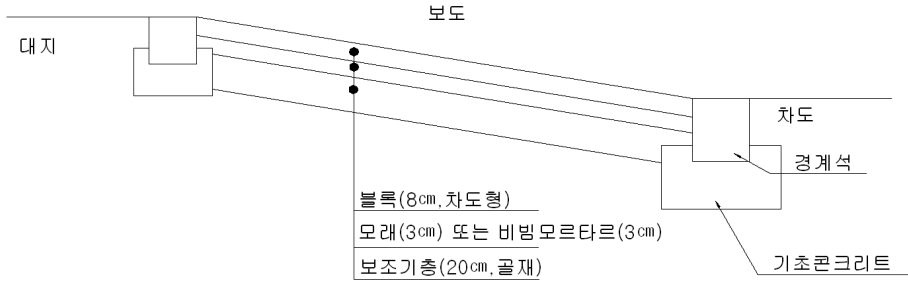
3. 지하주차장 진출입로

- 차량 진출입로(보도)는 보도설치 유형중 보도여건 감안 합리적인 유형 설치
-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는 보도 계획고와 일치(보도 계획고와 단차를 두지 말 것)
- 지하주차장 진출입로(대지 부분)는 보도면과 완만한 선형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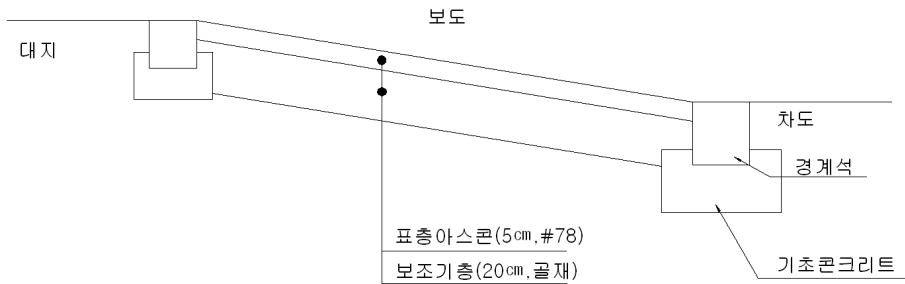


4. 포장재질별 단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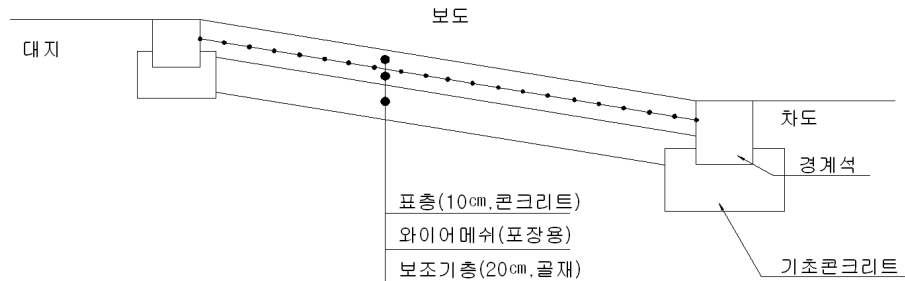
1) 블록포장



2) 아스콘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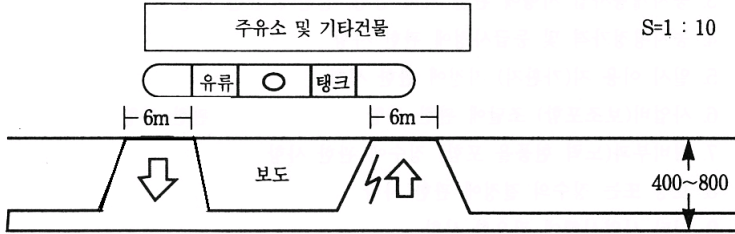


3) 콘크리트포장



5. 차도 폭에 따른 평면도

① 폭 12m 이상의 경우



② 폭 12m 이하의 경우

